



# 이쓰기계설비 (우시) 유한공사 VS 우시 쌍썬 정밀 주조공장 상 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15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쑹수성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5)苏民三终字第0117号
판결 일자	2006년 1월 11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권리자 패)
원심원고(피상소인)	이쓰기계설비(우시)유한공사 (일본계 독자기업)		
원심피고(상소인)	우시 쌍썬 정밀주조 공장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53조		
참조 판례			
영업비밀	HVS 350-250-400 수평분할 펌프 임펠러블레이드 코너 각 및 출구 각의 매개 변수		
키워드 (Keyword)	외국계 독자기업(外商独资企业), 금형(模具), 복제(复制), 입증책임(举证责任), 비공지기술(非公知技术)		

## 02 사건 개요

이쓰기계설비(우시)유한공사(이하 '이쓰공사')는 일본계 독자기업으로 물 펌프를 생산한다. 우시 쌍썬 정밀주조 공장(이하 '쌍썬 주조공장')은 이쓰공사에 주물을 공급하였고, 이쓰공사는 주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금형을 항상 쌍썬 주조공장에 보관하였다.

이쓰공사는 2004년 3월 쌍썬 주조공장과 비밀보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하는 주물을 얻기 위해 쌍썬 주조 공장에 금형 및 설계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은 이쓰공사가 가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쌍썬 주조공장이 금형을 무단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주물을 생산 판매 하였다. 이에 이쓰공사는 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 심리 중, 이쓰공사의 기술이 비공지 기술이며, 금형의 매개변수와 상품의 매개변수가 일치한다는 감정의견도 있었으나, 심리 중 쌍썬 주조공장이 이쓰공사에게 HVS 250-250-400 물 펌프 금형을 반환하였는데도, 같은 타입의 금형이 발견되었고, 금형이 출처가 진위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에, 원심 원고 이쓰공사가 원심 피고 쌍썬 주조공장이 본 사건 관련 금형을 임의 복제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쓰공사가 입증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업비밀 침해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쓰공사는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것이다.

###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피상소인)



원심 피고(상소인)

쌍썬 주조공장이 두 세트의 금형을 반환하였는데, 쌍썬 주조공장이 한 세트의 금형 출처를 설명할 수 없다면, 당연히 금형을 복제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른 증거에 의한 증명 필요 없다.

상업비밀이 아니다.

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일이 없다.

### 04 판결 요지

이쯔공사 설계의 HVS 350-250-400 수평분할 임펠러블레이드 코너 각, 출구 각의 매개 변수는 비공지 기술이고, 기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쯔공사의 상업기술비밀에 해당한다.

이쯔공사가 쌍썬 주조공장에 1세트의 금형을 넘겨주었고, 쌍썬 주조공장은 2세트의 해당 타입 금형을 반환하였다. 이에 이쯔공사는 쌍썬 주조공장이 1세트를 무단 복제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쯔공사가 양자 간 이전의 협력관계 상태에 있을 때 2세트의 같은 타입 금형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쯔공사가 이와 같은 1심 판결이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근거를 대지 못하였으므로, 2심 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 05 Key Point

권리자가 상업비밀 침해소송을 함에 있어서, 우선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분명히 특정하여야 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중국 모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을 가지고 있다.

본 사건 원심 원고에게 다소 무거운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